[별지 제7호 서식] (앞면)

농업생물표본 대출계약서

농업생물표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제공자”라 한다)에서 대출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제1조 신청자는 대출된 농업생물표본을 학술연구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제2조 신청자는 대출받은 농업생물표본이 국가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대출받은 표본을 분실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제공자와 변상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신청자는 대출받을 당시 제출된 대출 신청서에 시료채취를 신청한 경우, 연구목적의 한에서 표본의 변형 또는 훼손이 없도록 최소한의 양을 이용해야한다.

제4조 신청자가 대출받은 표본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자는 대출받은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제공자가 제공하는 고유번호 등을 명기하고 제공자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자는 대출받은 농업생물표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제공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신청자는 대출받을 당시 제출된 대출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자는 승인된 대출 기간 내에 농업생물표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공자는 신청자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뒷면)

제9조 제공자는 대출된 농업생물표본의 안전성, 자원명, 자료의 정확성, 유전적 순수성 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그러한 보증이나 대출받은 자원의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자국의 방역 및 생물안전성규범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신청자는 농업생물표본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하여 제공자의 연구협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청자는 제1조 내지 제10조의 조건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서명한다.

제 공 자	기 관 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대 표 자	○ ○ ○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 청 자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년 월 일

제 공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